

#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

규정 · 소관 사회봉사단 · 현행 규정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현행 판)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477>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1:36:37 ·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자의 운영은 관련 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정기봉사자 : 6개월 이상 봉사에 참여한 자. [연간 30시간 이상]
  - 나. 일시봉사자 : 일정 기간 및 단시간 동안 참여하는 자
  - 다. 후원자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금을 기부하는 자
3. “자원봉사모임”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4. “교직원”은 본교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을 칭한다.

## 제4조(대학의 책무)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정책의 마련과 시행
2.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3.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4.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무인력 지원

##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2. 본교 동문회를 통한 모집
3. 본 재단의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모집

## 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9.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

## 제7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자원봉사자 교육방법

- 가. 신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모집 후 업무에 배치되기 전 1회의 기본교육 실시
- 나. 정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활동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의 이상 교육 실시

### 2. 자원봉사자 교육내용

- 가.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이해
- 나. 자원봉사를 위한 절차 및 기본수칙
- 다. 대상자 및 배치업무에 대한 이해
- 라.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훈련

##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등록, 배치는 다음 각호에 따르며, 자원봉사활동의 진작을 위해 다음의 보상과 인정을 제공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자 등록

- 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정확한 방법과 지침 제공
- 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일지 작성
- 다. 사회봉사단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 2. 자원봉사자 배치

- 가.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봉사활동 배치
- 나. 자원봉사자 요구 시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전환 배치
- 다. 금품 등 대가성을 요구하는 자는 봉사활동 거절
- 라. 자원봉사자 또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 거절

### 3. 보상과 인정

- 가. 봉사활동에 따라 중식 및 간식 등의 음식물 제공
- 나. 봉사활동에 따라 교통비 제공 [여비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적용)4항: km당 300원 지급]
- 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등의 물품 지원
- 라. 생일카드 또는 감사 서신 발송
- 마. 활동평가에 따른 포상

## 제9조(자원봉사모임 구성)

자원봉사모임은 자발적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성한다.

## 제10조(자원봉사모임 등록)

자원봉사모임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
- 2.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접수된 등록신청서의 심사를 통해 자원봉사모임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승인
- 3. 등록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제11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자원봉사의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사업 방향 및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2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사회봉사단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자원봉사모임 대표(1명), 교수대표(1명), 직원대표(1명)로 한다.

### **제13조(자원봉사운영위원 선임 및 임기)**

운영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자원봉사모임 대표, 교수대표, 직원대표를 선임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은 자신의 임기와 동일한 임기를 갖는다.

### **제14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수립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인정
3. 자원봉사모임에 대한 등록 승인
4. 기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의 결정

### **제16조(차량운행)**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차량 사용 시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